

경주마 조교심사 시행기준집

目 次

제 1편 총칙(總則)

1. 심사의 근거
2. 심사의 목적
3. 심사의 범위
4. 심사의 개요
5. 심사의 단계
6. 용어의 정의

제 2편 조교심사(調教審査)

I. 출발심사

II. 주행심사

1. 심사일시 및 장소
2. 심사위원
3. 심사대상마
4. 심사기승자
5. 심사내용
6. 심사편성 및 확정
7. 신청취소 및 기승자 변경
8. 심사방법
9. 심사진행 공통사항
10. 합격기준
11. (불)합격마의 처리

제 3편 부칙(附則)

제 1편 총칙

1. 심사 근거

□ 근거조항

▶경마시행규정 제50조(마체검사 및 조교상태 심사)

- 처음 출전하는 신마 및 심판위원이 지정한 말(재심마, 휴양마 등)은 소정의 조교심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전할 수 있다.

2. 심사 목적

- 경주마의 조교상태 확인 및 능력검증을 시행하는데 있다.

3. 심사 범위

- “기승자(보조자)의 지시에 따른 말의 복종”에 바탕을 두어 경주마에게 요구되는 출발, 주행관련 조교수준을 확인한다.

4. 심사 개요

구 분	내 용	
심사종류	출발심사	주행심사
심사방법	출발 진행과정 시행	경마진행 전체 과정 시행 - 소정의 심사거리 주행
심사대상	신마, 출발재심마, 합격유보마 등	신마, 주행재심마, 휴양마 등
심사위원	출발심사위원	주행심사위원
합격기준	기본순치 및 출발조교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말	출장, 출발, 주행조교 상태 및 1000m 주파기록이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말

5. 심사 단계

대상마	심사 단계
신마	◆ 출발심사 → 주행심사 → 경주출전
출발재심마(연속)*	◆ 출발심사 → 출발심사 → 경주출전
주행재심마	◆ 주행심사 → 경주출전
출발(연속)*+주행재심마	◆ 출발심사 → 출발심사 → 주행심사 → 경주출전
휴양(도래)마	◆ 주행심사 → 경주출전
합격유보마	◆ 출발심사 → 경주출전
중대악벽마(연속)**	◆ 출발심사(4·6) → 주행심사(2·3) → 경주출전

* 출발재심마 연속합격 의미: 출발심사 1회 합격 후 2회차 불합격 시 1회차부터 다시 시작

** 중대악벽마 출발심사 수검 단계(출발심사 3단계 총 6회 처분 예시)



- 휴양마 : 주행심사 합격일 또는 최종 경주출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말
- 휴양도래마: 주행심사 합격일 또는 최종 경주출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말
- 합격유보마: 주행심사에서 주파기록 등 주행관련 부분은 양호하나 출발 관련으로 불합격된 말
- 중대악벽마: 출발 시 고착 또는 주행거부 등 악벽이 심하여 심판위원이 별도로 지정한 말

6. 용어 정의

□ 출발심사

- 실 경주시의 출발과정에 대비하여 운승 · 진입 · 출발자세 · 출발 · 발진 등 조교상태 및 출발환경 전반에 대한 순치여부를 판정하는 과정

□ 주행심사

- 실 경주 출전에 필요한 출장 · 출발 · 주행상태 및 주파기록 등 기본적인 과정을 사전에 검증하여 경주마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과정

제 2편 조교심사

I. 출발심사

1. 일시 및 장소 : 출발위원이 지정한 날, 장소에서 시행한다.(부칙1)
2. 심사위원 : 출발심사위원(부칙2)
3. 심사대상마(부칙3)
 - 신마, 출발심사 불합격마, 출발재심마, 합격유보마, 중대악벽마
4. 심사 기승자(부칙4)
 - 기수, 조교사, 기타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자
5. 심사내용
 - 경주마로서 갖추어야 할 출발현장 적응력 및 출발조교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“기승자(보조자)의 지시에 따른 심사마의 행동(상태)”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출발조교 수준을 검증함
 - 세부내용(부칙5)

구분	세부 검사 내용
	심사마 행동(상태)
운승 및 진입	기승자의 지시(유도)에 따른 올바른 반응(행동) 정도
출발자세	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안정 유지 능력 여부
출발 및 발진	출발신호(개문)에 따른 발진 및 올바른 주행전개 여부
출발환경에 대한 순치	보조자의 움직임, 보조장구, 통상적인 수준의 타마 악벽이나, 생활소음, 기상변화 등에 대한 순치 정도

6. 심사편성 및 확정(부칙6)

- 심사신청
 - 신청기한 : 출발위원이 지정한 날, 시간까지 한다.
 - 신청방법 : 전자신청
 - 신청권자 : 해당 조교사(또는 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
- 심사편성 및 확정 : 심사신청 마에 대해 심사위원이 적의 편성

7. 신청취소 및 기승자 변경(부칙7)

- 신청취소 : 해당 조교사(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가 심사 시작 전까지 신청한다.
- 기승자 변경 : 해당 조교사(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가 심사 시작 전까지 신청한다.

8. 심사방법(부칙8)

- 가. 개체식별 : 심사위원은 개체식별카드 또는 개체식별기를 이용하여 심사마를 확인할 수 있다.
- 나. 현장입회 : 관리 조교사(대행자)는 필요 시 출발심사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.(부칙9)
- 다. 운송 :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발대 후방에서 운송한다.
- 라. 진입 : 심사위원 지시에 따라 해당 칸으로 진입한다.
- 마. 주립 : 출발대 칸에 진입한 말들은 출발신호 시까지 평온히 대기한다.(부칙10)
- 바. 출발 : 출발신호(개문) 즉시 안정되게 출발한다.
- 사. 발진 : 발진은 일정거리를 전력주행하는 속도를 유지한다.

9. 심사진행 공통사항 : (부칙 11, 부칙 12, 부칙 13)

- 10. 합격기준 : 출발환경 적응 및 조교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된 말
- 11. 불합격기준 : 출발환경 적응 및 조교상태가 불량하다고 판정된 말(부칙 14)
- 12. (불)합격마의 처리
 - 불합격마 : 출발심사 재심사(부칙 15)
 - 합격마
 - 신마 : 주행심사 신청 가능
 - 재심마(합격유보마) : 수요일 최종 합격마는 당해 주 출전신청 가능

II. 주행심사

- 1. 일시 및 장소 : 출발위원이 지정한 날, 장소에서 시행한다.(부칙16)
- 2. 심사위원 : 주행심사위원(별도 인사명령)
- 3. 심사대상마(부칙17)
 - 신마, 주행심사 불합격마, 주행재심마, 장기휴양(도래)마, 중대악벽마
- 4. 심사 기승자 : 기수(부칙4)
- 5. 심사내용
 - 경주마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“기승자의 지시(부조)에 따른 수검마의 행동(능력)”을 하나의 심사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주행능력 수준을 검증함
 - 세부내용

구 분	세 부 검 사 내 용
	심사마 행동(상태)
출 장	기승자의 지시(유도)에 따른 올바른 보법전개
출 발	“출발심사 내용” 과 동일
주 행	경주에 대한 의욕 및 주행상태 · 경주기록 여부
외부환경에 대한 순치	통상적인 수준의 타마 악벽이나, 생활소음, 기상변화 등에 대한 순치 정도

6. 심사편성 및 확정(부칙18)

- 심사신청
 - 신청시한 : 출발위원이 지정한 날, 시간까지 한다.
 - 신청방법 : 전자신청
 - 신청권자 : 해당 조교사(또는 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
- 심사편성 및 확정 : 심사신청마에 대해 출발위원이 적의 편성

7. 신청취소 및 기승자 변경(부칙7)

- 신청취소 : 해당 조교사(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가 심사 시작 전까지 신청한다.
- 기승자 변경 : 해당 조교사(조교사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)가 심사 시작 전까지 신청한다.

8. 심사방법 : 출장, 출발과정 및 1000m 경주거리 주행

※ 제주경마 주행심사는 800m 경주거리 주행

- 개체식별 : 수의위원은 개체식별카드 또는 개체식별기를 이용하여 심사마를 확인한다.
- 전검량 : 기승자는 정해진 시각에 전검량을 한다.(부칙19)
- 출 장 : 경주로 관리위원의 지시에 따라 마번 순으로 출장하여 관람대 앞을 통과 후 출발지점으로 집합한다.
- 출 발 : “출발심사 방법” 동일(부칙20)(부칙21)
- 주 행 : 기승자는 심사마를 정상 주행토록 한다(부칙22)
- 후검량 : 결승선을 통과 후 기승자는 즉시 후검량을 받는다.

9. 심사진행 공통사항 : (부칙 23)

10. 합격기준 : 경주마의 조교상태 및 경주기록이 양호하다고 판정된 말(부칙 24)

11. (불)합격마의 처리(부칙 25)

- 출발관련 불합격마 : 출발심사 재심사(합격유보제 적용)
 - 단 중대악벽마의 경우 합격유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
- 주행관련 불합격마 : 주행심사 재심사
- 합격마 : 출전신청 가능
- 결과 공지 : 홈페이지 상에 공지
 - “연습주행마” 심사기록 병행 표기

제 3편 附則

《출발심사》

1. 출발심사 일정

구 분	서 울	제 주	부 경
심사요일	수·금요일	수·일요일	수·토요일
심사시간	06:30 ~ 09:00	08:00~ / 09:10~	08:00~
심사장소	1000m, 1400m	400m, 800m	1600m

※ 상기 일정은 부칙(26조, 가)에 근거하여 변경시행 가능

2. 출발심사위원

- 출발위원 및 기타 출발위원이 지정한 자(출발운영원에 한함)

3. 심사대상마

- 마명등록되지 않은 신마는 심사 불가
- 재심마는 재심처분일로부터 10일 이후 심사 가능
- 출주정지 병과마는 출주정지 기간 중에도 심사 가능
- 출발위원의 심사신청제한 조치가 있는 말은 제한기간 내 심사 불가
- 합격유보마는 합격유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받아야 하며 30일이 경과하거나 보완심사에서 불합격한 말은 출발심사 단계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.
- 중대악벽마는 심판위원이 지정한대로 심사를 받는다.

4. 출발심사 기승자

- 면허정지 중인 기수는 기승 불가(기승정지 기수는 가능)
- 면허정지 내지 조교정지 중인 조교사는 기승 불가
- 조교보조금지, 정지 중인 말관계자는 기승 불가
- 말관리금지, 정지 중인 관리사는 기승 불가
- 조교사, TRP 자격 승인 소속조 관계자에 한함
- 관리사는 TRP 자격 승인자에 한함

5. 출발심사 내용

- 경주마로서 갖추어야 할 출발현장 적응력 및 출발조교 상태를 확인 하는 것으로서 “기승자(보조자)의 지시에 따른 심사마의 행동·상태

- “출발과정”은 출발신호(개문) 후 정지했던 말이 출발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점(출발대 내에 있는 동안)을 말한다. 관련 악벽은 후기덱, 고착, 기립출발 등이 있다.
- “발전과정”은 출발대를 벗어나 전방으로 주행하는 과정(출발대를 벗어남)을 말한다. 관련악벽으로는 사행, 주행거부, 평보발전, 주행 불량 등이 있다.

6. 출발심사 편성 및 확정

- 출발심사는 경주 당 최저 3두 이상 편성 및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기상악화나 악벽, 부상 등으로 인한 심사두수 감소가 있을 때에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경주 당 동일 조교사 소속 심사마의 편성 가능두수 제한 없음
- 출발대 칸 지정 및 진입순서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른다.

7. 신청취소 및 기승자 변경

- 해당 경주 심사 중에는 심사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.
- 심사 중 악벽 등 사유로 심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- 기승자 변경은 심사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중 기승자 변경은 할 수 없다.

8. 심사방법

- 경마일 출발과정을 준용한다.

9. 현장입회

- 출발위원의 지시 또는 허가를 얻어 말 관계자는 심사현장에 입회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진입보조 등 보조행위를 할 수 없으나 필요 시 출발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다.
- 말 관계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제시나 심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0. 출발자세 준비 중 사고 처리

- 말의 악벽에 의해 앞문 파손 등 해당 출발대 칸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“출발대 칸의 변경”을 시행하지 않고 즉시 심사제외 한다.
- 단, 다른 사유(심사마의 비귀책 사유)에 의한 때에는 파손된 출발대 칸을 비워두고 해당마와 그로부터 바깥쪽에 위치한 다른 말들을 한 칸씩 바깥으로 이동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

11. 심사진행 공통사항

- 경주마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말 관계자의 심사마 보조, 보조장구의 사용 등은 사전에 심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심사기회는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.
-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곧바로 보완심사를 할 수 있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심사제외 할 수 있다.
 - 진입불량이 심한 말
 - 출발자세불량으로 기승자 및 타마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말
 - 악벽으로 해당 출발대 칸을 파손한 경우
 -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여하한 행위로 심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말
- 심사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일부 또는 전체 심사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
 - 말 관계자의 지시 불이행 등 심사진행 방해가 있는 때
 - 기타 공정한 출발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

12. 출발심사 중 “보완심사”에 관한 사항

-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보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.
 - 타마의 과도한 영향에 의해 불합격되고 이에 대해 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
 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불합격 판정이 되고 이에 대해 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

- 보완심사는 관계자에게 단 1회의 기회만 부여함을 사전에 확실하게 고지한 후 시행한다.
- 보완심사의 성격 상 출발 전 과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.

13. 출발심사 중 발진관련 심사범위에 관한 사항

- 출발대를 벗어난 후 출발 신호차가 위치한 곳(약 50m)까지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.
- 상기 범위를 벗어난 후 사행, 거부 등 악벽이 발현한 경우에는 출발심사는 합격시키되 구두로 보완조교를 강력하게 권고한다.

14. 세부 불합격 기준

- 운승불량마
 - 운승불량, 유도거부, 축벽 등 불량마
- 진입불량마
 - 진입거부가 심하며 진입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말
 - 눈가리개 사용마가 그 착용을 거부하는 말
 - 출발대 진입 시 사료급식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말
 - 심사위원의 심사제외 지시 이후에 진입시킨 말
- 출발자세불량마
 - 요동, 기립, 돌진 등 악벽이 심한 말
 - 비정상적 보조행위, 사료급식 등 악벽은폐 수단에 의존한 말
- 출발, 발진불량마
 - 늦 출발, 고착, 기립출발 등 출발상태가 불량한 말
 - 출발 직후 내·외측 사행, 주행거부, 급회전 등 발진상태가 불량한 말
- 기타 불합격 처리 기준
 - 심사위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기승자 변경·보조도구 사용 기타 보조수단을 사용한 경우
 - 고의로 타마의 심사진행을 보조 내지 방해한 경우
 -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

15. 출발심사 신청제한

- 출발심사 결과 조교상태가 극히 불량한 말 등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은 일정기간 출발심사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
《주행심사》

16. 주행심사 일정

※ 상황에 따라 변경 시행 가능

구분	서울	제주	부경
심사요일	목요일	목요일	토요일
심사시간	10:30~	10:30~	10:30~
심사장소	1000m 출발지점	800m 출발지점	1000m 출발지점

17. 심사대상마

- 출주정지 병과마는 출주정지 기간 중에도 심사 가능
- 심판위원의 심사신청제한 조치가 있는 말은 제한기간 내 심사 불가
- 출발 시 고착 또는 주행중지 처분 된 중대악벽마는 심판위원이 지시한 내용대로 심사 진행

18. 주행심사 편성 및 확정

- 주행심사는 경주 당 최저 5두 이상 편성 및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심사 중 마체이상, 마필악벽, 기수부상 등으로 심사두수가 5두 미만이 되었을 때는 심판위원이 심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.
- 경주 당 동일 조교사 소속 심사마의 편성제한두수는 없다.
- 출발대 칸 지정 및 진입순서는 출발위원이 결정한다.
- 후진입, 선진입 등 특별조치는 원칙적으로 시행 불가하며, 필요 시 사전에 출발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연습 주행마는 경주당 3두 이내 편성 가능하며 바깥칸으로 배치하고 정해진 등번호판을 착용해야 한다.
- 연습 주행마도 기승자는 기수에 한한다.
- 연습주행마는 모든 경주마에 허용하되, 신마의 경우는 출발심사에 반드시 합격해야 신청가능하다.

19. 전검량

- 부담중량은 경마계획표상의 별도 기준에 의해 정한다.
- 경마시행규정 제41조(기수의 부담중량 감량)의 기수 감량은 적용하지 않는다.
- 중량기승 시 +2kg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(검량)에게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. ※제주경마 주행심사는 +3kg 범위 내

20. 출발과정

- 진입은 출발위원의 지시에 따른다.
- 심사마의 악벽 순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위원은 특별한 진입순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원칙적으로 주행심사 중 특정 말에 대한 특별조치는 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 번호칸 부여 등을 조치할 수 있다.
 - 상당한 조교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고 관계자가 최후 수단으로 시행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
 - 출발위원이 판단할 때 부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※ 단, 상기 조치는 신청 시 1회에 한하며 지속해서 신청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다. 또한 반드시 조교를 통해 순차토록 사전에 고지한다.
- 눈가리개는 출발위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- 보조수단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관계자의 의견이 있고 출발위원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후방물이에 한하여 허용한다.
 - 출발 및 발진 관련 보조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

21. 출발불성립 상황의 처리

- 출발불성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발한 말은 정상적인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며 재출발하지 않는다.
- 출발대 오작동 또는 보조원, 보조도구 등에 의한 지장, 일부 말의 진입완료 전 출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발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말은 심사제외로 처리한다.

22. 주행

- 기승자는 정해진 복색을 착용하며 소정의 부담중량을 진다.
- 기승자는 “경주 시 기수의 준수 의무”를 이행한다.
- 규정 58조(장구의 제한)에 의한 지정장구 중 심판위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장구는 별도의 승인 없이 심사에 착용 할 수 있다.
- 주행악벽 재심지정마는 “심판위원지정 특기사항”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다(특정구간에서의 악벽내용별 심사방법 지정 지시)

23. 심사진행 공통사항

- 경주마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말 관계자의 심사마 보조는 사전에 심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심사제외 할 수 있다.
 - 정해진 시간에 출전준비소에 도착하지 않는 말
 - 출장불량이 심한 말
 - 진입불량이 심한 말
 - 출발자세불량으로 기승자 및 타마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말
 - 고장·파손 등으로 해당 출발대 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-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여하한 행위로 심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말
- 심사위원은 천재지변 등 심사진행이 불가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체 심사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24. 불합격 처리기준

- 출장조교 불량마
 - 출장 후 출발지점 도착 시까지 심한 악벽이 있는 말
- 출발조교 불량마 : 「출발심사 합격기준」 적용
- 주행조교 불량마·능력미달마
 - 주행 중 내·외측사행, 지그재그사행, 외곽주행 및 주행거부마
 - 1000m 주파기록이 1분06초를 초과한 말
 - ※ 제주경마 주행심사는 800m 주파기록이 1분 11초를 초과한 말
- 기타 불합격 처리 기준
 - 심사위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기승자 변경·보조도구 사용 기타 보조수단을 사용한 경우
 - 고의로 타마의 심사진행을 보조 내지 방해한 경우
 -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
 - 연습주행마의 방해로 인한 심사마의 피해는 구제되지 않는다.

25. 불합격마의 처리

- 심판위원은 심사마의 상태가 불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심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- “합격유보마”는 애초 주행심사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출발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, 출발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출발 및 주행 심사를 재심사해야 한다.

26. 심사일정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

가. **심사일 변경** : 계획된 일시에 심사를 시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에 심사일시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

- 심사 예정일이 법정 공휴일, 본회 사정에 의한 휴무조정일, 휴장기, 경주로 보수작업, 또는 경마유관단체의 사정 등에 인해 심사일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에게 공지한다.
- 처리담당자 : 심사위원

나. **심사취소** : 심사일정 확정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획된 전체 심사일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

- 태풍, 폭우, 폭설, 짙은 안개 등 기상악화가 심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정 전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편성은 무효로 하며 차주에 새롭게 심사신청 및 경주편성을 한다.
- 판단주체 : 심사위원장(심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판위원이 처리)

다. **심사중지** : 일부 심사 진행 이후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잔여 심사 일정을 시행하지 않고 심사일정을 마치는 경우

- 일부 심사 진행 이후 기상악화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잔여 일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심사일정을 마치는 경우에는 미시행한 잔여 심사편성은 무효로 하며 차주 이후에 새롭게 심사신청 및 경주편성을 한다.
- 판단주체 : 심사위원장(심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판위원이 처리)

라. **심사연기** :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획된 심사일정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당일 다른 시각으로 연기하여 시행하는 경우

- 심사연기는 계획 당일 오후로의 순연 시행에 한하며 다른 날로 연기하여 시행하지 않는다.
- 심사연기 후에도 기상악화 등이 계속되어 심사를 시행할 수 없는 때는 “**심사취소**” 한다.
- 판단주체 : 심사위원장(심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판위원이 처리)